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1년도 제6차 회의

1. 일 자 2011년 2월 24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재)

김대식 위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헌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강 태 혁 감 사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 박 원 식 부총재보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김 종 화 국제국장

유 병 갑 금융결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용 회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1호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 대한 결제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순채무한도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본 안건과 관련하여 2011년 2월 18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관 련부서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일부은행의 순채무한도가 여타은행의 그것에 비해 특히 높은 이유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순채무한도는 참가기관이 대거래고객의 자금이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들 일부은행은 증권대금 결제은행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타은행에 비해 자금이체 규모가 크므로 순채무한도도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담보증권 납입비율의 조정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할 경우 당행의 재량이 너무 커져 자의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담보증권 납입비율은 동일비율을 적용하되 순채무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담보증권 납입비율은 순채무한도 설정규모, 일 평균 소진율, 위험소진율 등의 실적을 반영하여 조정하기 때문에 자의성이 개입 될 여지가 크지 않은 반면, 현재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순채무한 도 자체를 당행이 높이는 방안은 동 한도 설정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오히려 더 큰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순채무한도 소진율에 따라 담보증권 납입비율을 차 등화하기보다 순채무한도 소진율이 담보증권 납입비율보다 높은 은행에 대해 1회성 페널티(penalty)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당행은 순채무한도 소진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소진율이 70%를 넘으면 바로 해당기관 앞 주의를 주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순채무한도 증액과 동시에 담보증권을 추가 납입토록 조치하고 있는 바, 담보증권의 추가 납입이 참가기관에게는 기회비용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페널티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이번 제도변경을 위해 참가 금융기관들과 사전협의를 거쳤 는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참가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안)(생략)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참조)